소유권이전등기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 [1심]	사건유형	공유재산
원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피 고	□□□ 외 1명
판결결과	[1심]2020. 11. 24. 원고승	비 고	
사건개요	❍ (구)인천.동구 송림동 **-*번지외 4필지는 196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후 지분등기를 통한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전체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어떤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을 단독 점유하면서도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는 소유 형태)가 이루어졌음. 이에 교육감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함.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는 10.50/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는 48.58/2741 지분에 관하여 2020. 6. 2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근거 및 결 론	가. 피고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